

교육훈련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 10. 1 시행세칙 제12호

개정 2015. 7. 28 시행세칙 제1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육훈련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종합이수제) ① 「교육훈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종합이수제의 적용대상 및 연간의무이수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1급 미만 일반직 직원

2. 연간의무이수점수

가. 2급 직원 : 20점

나. 3급 및 4급 직원 : 24점

다. 5급이하 직원 : 15점

② 필수이수과정, 이수점수 산정 및 적용기준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직급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 22조의2(상위직위부여)에 따른 상위직위를 수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

제3조(연간 교육훈련계획 포함사항)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분석
2. 전년도 교육성과분석
3. 교육요구분석
4. 교육목표, 기본방향,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5. 교육과정의 종류
6. 교육과정별 목표, 대상, 인원, 일정, 장소, 시행주관, 운영주체, 방법 및 주요교육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과정 개설 요청)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및 분석 결과 포함사항)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 및 분석 결과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대상, 인원, 방법, 기간, 장소, 시행기관
3. 교육비용
4. 주요교육내용
5. 교육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6. 교육수료자
7. 교육성과(성취도평가 등) 분석내용
8. 개선 및 건의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자체교육

제6조(집합교육 세부계획 포함사항)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과정명
2. 교육목표, 대상, 인원, 방법, 기간, 장소, 시행주관, 운영주체
3. 교육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4. 교육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5.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료요건
7. 소요예산
8. 등록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강사의 자격 및 임무) ①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내강사
 - 가.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단, 사내강사 양성과정 이수자는 1년) 이상인 사람
 - 나. 석사 이상 학위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다. 풍부한 학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사외강사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나.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석사 이상 학위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라. 풍부한 학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 전문가

②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강의, 출제 및 채점

2. 교재의 집필 및 강의교안 작성

3. 강사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한 강사역량 개발

4. 그 밖에 교육총괄부서장등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

제8조(학습 및 생활평가 기준)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학습 및 생활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성취도 평가방법 등) ①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취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2. 실기시험

3. 연구과제

4. 활동과제

5. 그 밖에 평가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문제는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형,

진위형, 단답형, 논술형 등을 적절히 혼합한다.

③ 성취도 평가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④ 교육총괄부서장등은 공무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교육생을 따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퇴교 및 자퇴 사유) ①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교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경우
3. 성취도 평가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제8조의 학습 및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 감점점수 합계 가 30점 이상인 경우

②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한 공무 수행
2. 상해 또는 질병
3. 경조사 휴가사유 발생
4. 그 밖에 교육총괄부서장등이 인정하는 사유

제11조(교육수료기준)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
2. 성취도 평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3. 제8조의 학습 및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 감점점수 합계가 20점 미만

4. 그 밖에 교육총괄부서장등이 정하는 기준

제3장 위탁교육

제12조(교육결과 보고)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실무과정 : 수료증 등 교육수료 입증자료 사본 및 교육총괄부서장이 따로 정한 교육결과 보고사항
2. 학위과정 : 학위기(學位記) 사본 및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3. 연구과정 : 수료증 등 교육수료 입증자료 사본 및 연구보고서
4. 연수과정 : 교육총괄부서장이 따로 정한 연수결과 보고사항

제13조(교육 및 학위취득 기간)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서약) 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약의 이행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교육중지 등 사유) 규정 제38조에 따른 교육중지, 휴학 및 일시귀국 사유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위탁교육비 지급기준) ①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담당부서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직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

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건강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 지급기준 중 체재비의 지급기간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복무의무 면제사유 등) ① 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복무의무 면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기구개편 등으로 인한 정원감축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2. 정년의 도래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3.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
4. 사망으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5. 공사 임원으로 임명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
6. 퇴직 직후 공사의 촉탁으로 위촉되는 경우
7. 공사 출자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거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8. 그 밖에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41조제4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기간 (단, 「인사규정」 제34조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외)
2. 정직기간
3. 직위해제기간
4. 교육기간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이 시행세칙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습 및 생활평가 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감 점 해 당 사 항	단위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3일 이하	4일 ~1주	2주 이상
학습 생활	등록 지연	1시간	5	4	3
	무단 결석	1일	30	25	20
	무단 결강, 조퇴, 이석, 지참, 외출	1시간	4	3	2
	승인받고 결석	1일	5	4	3
	승인받고 이석(결강), 조퇴, 지참, 외출	1시간	1	1	1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3	3	3
	학습태도 불량	1회	5	4	3
	시험태도 불량	1회	20	15	10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및 교육질서 문란	1회	20	15	10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	1회	5	5	3
연수원 생활	물품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1회	3	2	1
	무단외출	1회	15	10	10
	무단외박	1회	20	15	10
	귀원시간 미준수	1회	8	8	5
	질서문란	1회	30	30	25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	1회	5	4	3

주1) 감점합계가 30점 이상이면 퇴교조치할 수 있다.

주2) 연수원생활 중의 무단외출 및 귀원시간 미준수의 총 감점점수는 무단외박의 감점점수 이내로 한다.

[별표 2]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간 (제13조 관련)

구분			교육기간	학위취득기간
국내	석사과정	주간	2년 내	4년 내
		야간	2년 6개월 내	4년 6개월 내
	박사과정		3년 내	6년 내
	연구과정		해당기간(1년 내)	-
국외	석사과정		2년 내	4년 내
	박사과정		3년 내	6년 내
	연구과정		해당기간(1년 내)	-

주1) 휴학기간은 교육기간에서 제외한다.

주2) 학위취득기간은 교육기간을 포함한다.

주3) 교육기간의 교육시작일은 교육과견일 또는 교육기관입학일(상이할

경우 빠른 날)로 하고, 교육종료일은 교육과건 종료일 또는 학적상 수료일(상이할 경우 늦은 날)까지로 한다.

[별표 3]

교육중지·휴학·일시귀국 사유 (제15조 관련)

구분	사유
교육중지	1. 국가와 공사의 명예훼손 또는 품위손상 2. 공사의 제반사규 위반 3. 교육총괄부서장의 지시사항 불이행 4. 임의로 위탁교육 기관, 분야 또는 기간을 변경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6. 교육 성적이 불량한 경우 7. 징계 처분을 받거나 직위 해제된 경우 8. 교육총괄부서장이 해당기간 내에 교육이수 또는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공사의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10. 천재지변, 상해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휴학	1. 천재지변, 상해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귀국	1. 긴급한 공무 수행 2. 상해 또는 질병 치료 3. 경조사 휴가사유 발생 4. 그 밖에 교육총괄부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위탁교육비 지급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항목	지급기준
국내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연구보조비	사장이 따로 정함
	논문발간비	실비 (50부 이내)
국외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연구보조비	사장이 따로 정함
	논문발간비	실비 (50부 이내)
	체재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3 국외 훈련비지급기준의 2. 체재비 “가”항을 준용 (단, 1급은 그 금액의 1.35배, 2급은 1.2배 해당 금액)
	생활준비금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준용
	귀국이전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준용
	건강보험료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준용
	항공료 (삭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준용 (삭제)
	기타수수료 등	입학 및 출국수속 등에 소요되는 실비

주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일시귀국 왕복항공료는 추가로 지급한다.

1. 별표3 중 일시귀국 1. 긴급한 공무 수행
2. 별표3 중 일시귀국 3. 경조사 휴가사유 발생 중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서

1. 교육과정명	
2. 교육필요성	
3. 교육대상 및 인원	
4. 교육기간	
5. 교육방법	
6. 교육과목 및 주요교육내용	
7. 기대효과	
8. 소요예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이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처(본부)장 (인)

교육총괄부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 관련)

서 약 서

1. 서약자

소속	직급	사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위탁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전공)분야 또는 학과	교육과정
교육기간 ~	학위취득기간 ~	

3. 서약사항

- 가. 대한민국 국민과 공사 직원으로서 국가와 공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취업규칙 등 공사의 제반사규와 그 밖에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틀림없이 준수·이행하겠습니다.
- 나.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한 태도로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수료, 학위취득, 연구 등의 교육 목적을 해당기간 내에 달성하겠으며, 교육종료 후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지체없이 귀임하겠습니다.
- 다. 교육기관, 교육(전공)분야 또는 학과,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논문 또는 연구 주제를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 라.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으며, 성적불량 또는 학칙(교칙)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정학, 퇴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겠습니다.
- 마. 본인 신상, 교육상황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고 수료증, 학위기(學位記) 및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성적표 등 교육결과와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겠습니다.
- 바.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중지 및 소환명령, 교육비 변상 명령, 징계 등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언제든지 이의없이 따르겠습니다.
- 사.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가 지급하는 위탁교육비를 같은 규정에 따라 틀림없이 변상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위탁교육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